

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(8급) 채용공고

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근무할 정책지원관(일반임기제 8급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6년 4월 9일

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 분야	채용 직급	채용 인원	임용 기간	근무 시간	근무 부서	직무내용
정책 지원관	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(8급)	1명	1년	주 40시간	도봉구 의회 사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조례 제·개정 및 폐지, 예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•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등• 행정사무감사·조사 지원•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•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

*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

2. 관련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1조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예정일)

가. 공통 자격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및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응시연령: 18세 이상(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
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

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

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자세히 확인

나. 직무 자격요건

채용분야	응시 자격 요건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3호
정책지원관 (일반임기제 8급)	<p>○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hr/> <p>[관련분야 실무경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분야: 의회, 법제, 공공행정, 지방자치 등 • 관련분야 경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연구소, 대학교에서 관련분야 연구·조사·분석·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 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 * 공공기관: 공공기관 지정 고시(재정경제부)에 따른 공공기관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입법·정책 지원 또는 일반행정

※ 실무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※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
※ 인턴, 사무보조, 단순 자료 취합, 비서 등의 경력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
※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,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 인정(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)

※ 자격요건은 공통 자격요건 및 직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4. 채용 조건 및 보수 수준

가. 근무시간: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(09:00~18:00)

나. 채용기간: 임용일로부터 1년

※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다. 보수수준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퍼센트 범위에서 책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일반임기제8급(상당)	62,096천원	44,296천원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(직급보조비, 시간외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)
- 보험가입: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(선택)

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가. 시험 일정

서류전형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
2026.5.7.(목) 15:00 제1위원회실 (도봉구의회 3층)	2026.5.8.(금) 18:00	2026.5.13.(수) 15:00 제1위원회실 (도봉구의회 3층)	2026.5.14.(목) 18:00

※ 서류전형 합격자, 면접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**도봉구의회 홈페이지**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공고 실시 예정

나. 채용공고

- 공고기간: 2026. 4. 9.(목)~4. 23.(목)(14일)
- 공고방법: 도봉구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council-dobong.seoul.kr>) 공지사항

다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4. 24.(금)~4. 30.(목) 9:00~18:00
 - 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※ **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**
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(단,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)
 - ※ 등기우편 접수는 **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**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 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(5,000원)는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또는 우편환으로 송부
- 접수처: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
[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(방학동), (우) 01331]
 -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- **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**

라.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 적합 여부 서면으로 심사

마. 2차 시험: 면접(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적으로 평가
- 평가요소별로 각각 상(20점~16점), 중(15점~11점), 하(10점 이하)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정하여 평정결과(항목별 점수합계)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- (평가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(평가방식)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- (불합격 기준)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,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○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바. 최종합격자(예비 포함) 발표

- 2차 시험(면접시험)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- 제출서류 총괄표(별지 제1호서식) 1부
- 응시원서(별지 제2호서식) 1부
 - 응시수수료: 5,000원 상당 수입증지
(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매, 정부수입인지는 불가)
 - ※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보험통상 또는 우편환으로 해당금액 송부
 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(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를 첨부)
 - ※ 원서접수처(도봉구 의회사무국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도봉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증지를 구입해 오시기 바랍니다.

- 이력서(별지 제3호서식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 - 공무원 재직자 및 퇴직자의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“인사기록(요약카드)” 제출
-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6호서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제7호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별지 제8호서식) 1부
 -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 1부
-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(재직)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각 1부
 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해 제출)

-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일 경우 대학교, 대학원 모두 제출
 - ※ 최종 합격 시 원본 지참
-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별지 제9호서식) 1부
- 자기소개서 증빙자료(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, 상훈 등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합니다.
 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
 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 전액
 -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(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83조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장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3조의3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의2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도봉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재공고합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,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.
-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르며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 해석에 따릅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팀(02-2091-4703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직무기술서 1부.
2. 제출서류 서식 각 1부(별도 첨부).

직무기술서

임용기관	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근무예정부서	선발예정인원
도봉구의회	정책지원관	일반임기제 8급	의회사무국	1명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 제·개정 및 폐지, 예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○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등 ○ 행정사무감사·조사 지원 ○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○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
------	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과 예·결산안에 대한 자료 작성·조사 및 분석 능력 ○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 지원 능력 ○ 행정사무감사 보좌능력 등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력
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회와 의사진행,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지식 ○ 도봉구 조직과 기구 등 위원회 소관 조례안 처리를 위한 관련법령 및 규정관련 지식 ○ 예·결산안 관련 자료 취합 및 분석을 위한 지식
------	---

응시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<p>[관련분야 실무경력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련분야: 의회, 법제, 공공행정, 지방자치 등 • 관련분야 경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연구소, 대학교에서 관련분야 연구·조사·분석·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 (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상세히 명시) * 공공기관: 공공기관 지정 고시(재정경제부)에 따른 공공기관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입법·정책 지원 또는 일반행정